강릉시의회 공고 제2021- 4호

2021년 4월 7일

강 룽 시 의 회 의 장

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O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기준 중, 관내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하여 편법 사용 방지.
-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기준 중, 강릉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를 구제받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에 대비하여 신설조항 필요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 기준 강화(안 제7조 제1호)
- 나.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 기준 신설(안 제7조 제6호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・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:

- 주소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

- 전화: 033-640-4100

- 팩스: 033-640-4070

붙임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강릉시 조례 제 호

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 제7조제1호 본문 중 "6개월"을 "1년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사용자의 자격) 공설장사시	제7조(사용자의 자격)
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	
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	
다.	
1. 사망자나 그 배우자 및 직계 존	1
비속이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상	
시에 주소를 두고 <u>6개월</u> 이상	<u>1년</u>
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.	
다만, 시 사천면 석교리 출신자	
는 등록기준지를 포함한다.	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
	정하는 사람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법규명:							
(○ 성명(단체명) :						
(○주 소	:					
() 연 락 처	:					
	제ㆍ개정안 내용	의		견	비고		
		I					